

한국 국립공원의 국제 공인을 위한 공원계획 수립*

- 용도지구계획을 중심으로 -

조 기 호**

Planning of Korean National Park for International Approval^{*}

- In case of zoning plan -

Jo, Gi-Ho**

요약 :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국립공원, 국제공인, 용도지구계획

Abstract :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approval of national parks in Korea. Much of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be found in planning and law. Therefore the provisions for planning in the Korean National Park Law and 20 national park plan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criterion. Then a gradual changing model of zoning plan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zoning plan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applied to Hallasan National Park. These model can be applied to change the zoning plans of national parks in Korea for international approval

Key Words : national park, international approval, zoning plan

1. 서 론

1962년 12월 제16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되기 시작한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과 같은 수준의 보존지역에 대한 유엔 목록'¹⁾은 국가별로 각양각색인 국립공원과 보존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국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유엔 목록에는 면적크기, 관리목적, 관리기관의 지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적합하게 지정·관리되는 국립공원과 보존지역만을 유엔 목

록에 등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경우 각 국은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자국의 공원이 국제적인 공인하에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41개의²⁾ 공원이 유엔 목록에 국립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는 현재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유엔 목록에 국립공원으로 등록된 국립공원은 아직까지 없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대한환경공학회 1998년 추계 학술연구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국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립공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국내 국립공원의 지정과 계획 및 관리에 국제공인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국립공원은 그 지정목적에서 언급되는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조화되기 쉽지 않은 갈등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에서는 선 보존 후 친환경적 이용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개발이용을 염두에 두고 지정이 이루어졌고,⁹⁾ 지금까지 민원과 세수입을 고려한 개발이용과 관광객의 증가로 훼손되고 오염되는 사례가 증가되어 왔으며,¹⁰⁾ 건설부와 내무부를 거쳐 환경부로 그 관리업무가 이관된 지금도 여전히 개발이용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내에서는 주로 규제와 관리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보다 근원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공원계획의 문제점과 그 공원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들이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계획은 국내에서도 자연공원법 제13조 2항에 따라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공원 관련업무도 환경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관련 정책과 법규의 정비와 함께 국립공원의 보호와 관리 및 이용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나 변경은 개발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온 경우가 많았는데,¹¹⁾ 선진 외국에서는 '국립공원 2000'¹²⁾과 같은 장기계획 및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관리하여 자국의 국립공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국제공인을 위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국립공원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계획, 관리,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국

립공원계획의 근간이며, 국립공원 관리와 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용도지구계획을 중심 내용 범위로 정하였고, 진행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국립공원의 정의, 지정, 관리, 용도지구 등 공원계획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조항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한다. 다음 국내 20개 국립공원의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부분별 항공사진판독 및 현장답사 등의 확인을 거쳐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찾아 제시하며, 이를 사례지역 국립공원에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결과는 한국의 국립공원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국립공원에서의 보존과 이용의 갈등 해소 기준 제공 및 국립공원에 관한 정책결정과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립공원계획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비교

1) 국립공원계획 관련 국제기준

국립공원계획 수립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공원의 정의와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국립공원의 정의를 살펴 보면, 유엔의 위임을 받은 국제자연보존협회(IUCN)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국립공원은 “육지 그리고/또는 해양의 자연지역으로서 a: 현재대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하나 또는 여러 생태계의 생태학적 원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며, b: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개발이용이나 점유를 배제하고, c: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목적의 탐방기회 제공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이러한 탐방들이 환경적, 문화적으로 모순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국립공원의 선정기준은 “1. 동식물의 종, 서식지 및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 특별히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으로, 그리고 휴양과 관광에 의미가 있는 주요 자연 지역이나 특징 및 경관의 대표적인 본보

기를 포함하여야 하고, 2. 현재 인간의 점유나 개발이용으로 현저히 변모되지 않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완전한 생태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정 면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은 인간의 개발이용과 점유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완전한 생태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하며, 실제로 유엔 목록에는 그 면적이 최소한 1,000ha가 되는 또는 예외적이긴 하나 전 지역이 완전히 보호되는 섬의 경우에는 100ha가 되는 지역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되는 보호지역들은 독립 고립된 단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이 지역이 지정된 보호지역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보호지역에 관한 계획과 관리가 해당 지역계획안에 포함되고 광역정책에서 지지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지정된 국립공원의 관리목적은 다음의 6가지로 구분되고 있다.⁶⁾

1.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또는 관광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지역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
2. 생태적 균형안정과 다양성을 위하여, 자연지형, 생물의 군락, 유전자원과 종의 대표적인 본보기들을 가능한 한 자연상태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함.
3.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휴양목적의 탐방이용이, 지정된 지역이 자연상태나 자연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함.
4. 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개발이용과 점유의 제지와 예방을 위함.
5. 지정의 근거가 되는 종교적, 예술적, 지형학적, 생태학적 특성의 존중가치를 유지하기 위함.
6. 다른 관리 대상물에게 위해하지 않은 정도에서의 생존자원 이용을 포함한 토착민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함.

그리고 이를 위하여 소유와 관리는 일반적으로 지정 지역에 대한 사법권을 지닌 국가 최고 권한의 지위에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은 그러나 다른 수준의 정부기관이나 지정한 지역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하여 헌신해 온 토착민위원회, 재단 및 법인체에 부여할 수도 있다.

용도지구의 구분이나 그 종류에 관해서는 국립공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보호지역들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⁶⁾ 첫 번째 관리 목적들이 해당 지역이 어떤 종류의 보호지역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지만, 공원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관리지구 설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한 보호지역의 종류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지역의 3/4이, 바람직하기로는 3/4 이상의 면적이 해당 보호지역의 첫 번째 관리목적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그 나머지의 면적도 첫 번째 목적과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관리목적은 국립공원의 경우 생물 종과 유전적 다양성의 보존, 환경서비스 유지, 관광과 휴양을 의미한다.⁶⁾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들은 국립공원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2) 국립공원계획 관련 국내기준

국내에서는 국립공원에 관한 사항이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원계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서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소유의 5개 조항으로 정하여 각 조항별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고 지정되는 국립공원의 계획은 제15조에 규정된 4가지 내용, 즉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관리계획, 4. 공원

자원보존계획으로 수립되며, 공원용도지구계획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제16조 1항에 의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의 4개 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6조 2항에 각 용도지구별로 많은 허용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허용행위들은 국제기준에⁶⁾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⁷⁾ 특히 자연환경지구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연보존지구에서도 조림, 육림, 벌채, 임도의 설치 및 사업을 허용하는 등 국립공원의 보존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많음은 이미 전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3), 4), 7)}

3)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비교

먼저 국립공원의 정의를 국제기준과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는 국립공원을 “한국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분류상 두 번째의 ‘국립공원’ 보다는 다섯 번째의 ‘보호 육지경관 및 해상경관’ 지역에 적합하게 정의되어 있으나,⁸⁾ 국제기준에서는 주로 지정 및 관리목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국립공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내려져 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1조 법의 목적에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에 개정된 법의 목적에서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의 지정·보존·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의 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태계의 원상태 보존이라는 지정목적이 우선적으로 명시되고, 다음으로 국내법에는 누락되어 있는 개발이나 점유를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보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휴양과 관광 목적에 앞서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인 탐방기회 제공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용은 환경적, 문화적으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이 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 세대만이 아니라 후 세대를 위하고,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국립공원에 포함

시키고 있다.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국내법의 경우 자연 및 문화적 기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없는 이용편의를 규정하여 이용지역 입지본포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존지역 지정 기준으로서의 생소한 내용이다. 또한 토지소유관계가 언급되어 사유재산권 문제와 이에 따른 관리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국제기준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생태계와 지형의 존재 및 보존상태와 함께 보존해야 할 생태계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야 함이 언급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이용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의 경우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및 탐방이용에 국한되며, 지정된 지역이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수준에서의 탐방이용과 지정근거가 되는 종교적, 예술적, 지형학적,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대상물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립공원에서 자주 충돌되는 보존과 개발이용의 갈등문제 해결기준으로, 국립공원에서 이용에 앞서 원상태 보존의 기능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관리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국내법에서는 공원 사업 및 점용이 일정한 형태로 허가되고 있으나,⁹⁾ 국제기준에서는 관리목적의 주가 지정지역의 유지·보존에 있음과 지정목적에 해가 되는 기존의 개발 및 점유 상태는 제거하고 미래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와 같이 공원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용 개발과 시설물설치가 허가되고 이를 위한 개발계획들이 국립공원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은 국제기준의 국립공원 선정 및 관리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기준의 정의나 지역선정 및 관리목적에서 언급되고 있는 휴양탐방은 일반 관광지에서의 관광행태와는 다른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목적의 탐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내의 집단시설 지구에서 처럼 대규모 스포츠시설 및 온천 관광단지의 개발이용이나 유흥오락 및 음주가무 행태의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⁹⁾

용도지구 구분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구분할 수도 있으나 모든 국립공원이 획일적으로 용도지구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특성과 관리 목적상 용도지구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원지정의 첫 번째 관리목적에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서는 지정면적의 3/4 이상이 공원지정의 첫 번째 관리 목적에 합당하게 관리되어야 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이 단지 4개의 용도지구로 구분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다. 공원계획의 내용에서도 국내법에서는 시설계획이 중요하게 두 번째로 앞에 언급되어 있고, 보존계획은 제15조 1항에 네 번째로 말미에 언급되어 있으며, 지정목적에 맞는 이용계획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제기준을 수용한다면 먼저 지정대상의 보존계획이 수립되고, 다음으로 보존지역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목적의 국립공원에 합당한 탐방이용계획이 수립되며, 그 다음으로 보존과 이용계획을 뒷받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계획은 모든 공원에 수립되어 있으나, 자원보존계획은 한려해상과 다도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대부분 공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공원에서 자연생태계 보존계획은 없고 문화계 보존계획만이 언급되어 있었다. 보존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공원의 경우 관리계획 또는 운영계획에 보존계획에 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997년 12월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과 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공원이 일제히 자연생태계보존계획이란 이름의 별도의 자체 간행물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국내 국립공원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국제기준은 물론 국내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개발계획, 개발추진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다른 계획에 비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공원계획 내용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보면, 국제기준에서 중요시하는 지정된 지역의 보존계획이 매우 미흡하게 수립되어 있는데 반하여, 국제기준에서 금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경주를 제외한 모든 공원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특히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들이 상세히 수립되어 있으며,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목적 탐방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정 당시 국내 국립공원들의 실질적인 지정목적이 국제기준과는 상이하게 지정 지역의 보존 보다 개발이용에 편향되어 있었고,³⁾ 이를 국내 법규도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기준을 척도로 한 국내 국립공원 계획 분석

1) 국립공원계획 내용

국내 국립공원계획에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4가지 계획 내용 중에서 시설계획, 용도지구계획,

표 1. 국립공원계획의 내용 분석

국립공원 계획 내용	산지형 ^{a)}														해안형 ^{b)}				문화 재형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한라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상
공원자원보존계획	x	△	x	x	△	△	△	△	△	△	△	△	△	△	△	△	0	x	0	x
환경친화적 탐방이용계획*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공원용도지구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원관리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원시설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개발(추진)계획 또는 사업계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x

주. 0, 포함 x: 없음 △: 일부 포함(문화계 보존계획만 있고 자연생태계 보존계획이 없거나 관리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보존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획내용임

2) 국립공원 면적

국립공원의 면적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보면 20개 국립공원 모두 절대 총면적에서는 국제기준의 1,000ha 기준을 충족한다(표 2). 그런데 한려해상, 다도해상, 경주, 번산반도의 경우에는 공원지역이 여러 개의 고립지역으로 분리·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리된 독립지역별로 면적이 1,000ha를 넘는 경우에 그 해당 지역만이 국제 면적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해도 다시 그 면적내의 생태계 단절여부와 용도지구 구분 및 용도지구별 허용행위를 함께 살펴보아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섬 전체가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100ha의 면적기준은 여러 개의 고립 지역으로 분리 지정된 남해안의 해안형^b 국립공원의 경우에 분리된 공원지역으로서의 섬이 완전히 하나의 자연보존지구로 계획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고립 분리 지정된 해당 섬 지역이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어 이를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된 공원면적이 분리되지 않은 16개 공원과 공원면적이 포장도로나 인위적 토지이용

으로 재차 분리되어 생태계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각 단절지역 별로 분리하여 면적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면적기준은 보전될 하나 이상의 생태계가 분할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면적이 고립 지역으로 분리 분산되었거나 공원구역 내에 하나 이상의 터널을 형성하면서 통과하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의하여 단절된 숫자는 고도가 높고 큰 산맥이 위치한 산지형^b 공원일수록 적었으나, 고도가 낮고 취락이 많은 지역일수록 많았다. 국내 국립공원별 생태계 단절 숫자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6개까지 확인되었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용도지구 구분의 문제점과 함께 공원관리상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한편 해안형 국립공원의 경우에 전체 지정면적의 대부분은 해양이었으나 보존지구의 면적은 모두 육지 부분이었고, 해양은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해양을 국립공원지역에 포함시킨 이유인 해양생태계의 보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육안으로 파악되는 해상의, 즉 바다 표면 위로 나타난 지형의 경관을 지정 근거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면적에 관한 국제기준에 충족되는 국립

표 2. 국립공원 면적과 그 분할

국립공원 계획 내용	산지형															해안형				문화 재형 경주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지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한라산	번산반도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상	
공원별 총면적	+	+	+	+	+	+	+	+	+	+	+	+	+	+	+	+	+	+	+	+
독립 분리·분산된 공원지역의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6	1	8	9
인공물로 단절된 생태계 분할 수#	4	4	5	13	9	5	5	4	4	8	2	8	4	2	5	7	16	4	16	10
독립 분리·분산된 자연보존지구 수	4	1	2	4	2	3	3	2	4	3	3	3	2	3	1	3	10	1	128*	7
자연보존지구/ 총 면적 비율	5.4	8.2	38.6	32.8	12.6	10.5	6.7	13.8	10.4	11.3	7.9	11.2	3.5	9.8	16.8	9.4	1.8	0.1	2.5	22.3
자연보존지구 중 최대치 면적	+	+	+	+	+	+	+	+	+	+	+	+	+	+	+	+	-	-	-	-
전체면적 중 국공유지 비율	49.8	46.8	83.9	46.2	37.2	24.1	73.5	70.2	49.2	61.5	59.2	71.4	76.3	51.3	98.8	68.8	76.5	90.7	88.5	10.2

주: +: 1,000ha 이상 -: 1,000ha 미만 #: 본문 참조 *: 약 128개의 섬과 분리독립지역들로 구분됨

공원은 생태계가 분리 단절되지 않은 자연보존지구 중 최대치 면적이 1,000ha의 범위를 넘는 공원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도 다음에 언급할 공원 전체면적의 최소한 3/4이 첫 번째 관리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국제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용도지구계획 기준

용도지구계획에 관한 국내기준은 자연공원법 제16조 1항에 있다. 국내법에 명시된 용도지구 중에서 보호지구로 분리될 수 있는 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인데, 국내 각 공원별로 계획수립 시 고려한 용도지구 구분의 기준 중에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구분기준을 국제기준의 관리목적에 제시된 기준과 비교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용도지구 구분기준의 분석 시 생태계보존 항목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생태계보존이라는 기준은 국내 국립공원계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연보호, 자연자원보호, 자연상태유지, 원상태유지, 식생생태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생태계보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제기준에서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에는 단순히 사적지나 유물 등의 보존뿐만 아니라 전통, 습관, 의식, 종교적 의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의 문화유적지보호 항목과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제기준의 관리목적에서 관리대상물에 위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의 토착민 생존수요 고려항목은 국내법의 취약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 3에서 제외시켰다. 국내 공원계획에서는 기타 기반시설, 토지이용, 접근성 등도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구분기준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다.

각 공원계획의 자연보존지구 구분기준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태계보존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자연보호는 95%의 공원계획에서 구분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지형보존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에서 의미하는 지형학의 학술적 근거를 기준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수려한 경관의 보존이라는 기준은 모든 국립공원계획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는 자연공원법

에서 기인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경관보존에 지형의 보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식물의 종과 서식지 보존에 관해서도 90%의 공원계획에서 언급되었고, 학술적 가치에 관해서도 65%의 계획에서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들도 자연공원법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준에 언급된 교육적 가치를 구분기준으로 언급한 공원계획은 없었다. 정신적, 문화적 가치에 관해서도 계룡산 국립공원과 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언급이 없었으나, 문화유적의 보호라는 근거는 75%의 공원계획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개발과 점유를 금지하기 위한 이유는 국내 어느 국립공원계획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원시설의 설치도 자연환경지구의 구분근거로 선택한 공원계획들이 존재하는 것과 앞서 언급한 공원계획내용에서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모든 계획에 포함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훼손방지와 복원이 자연보존지구의 구분근거로 언급된 공원이 75%나 되는데, 문화재가 아닌 자연생태계의 복원은 엄밀한 의미의 자연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생태계의 변화는 자연의 힘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적으로 가꾸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보존지구가 계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휴양탐방의 가치유지 및 기회제공에 관해서도 국내 공원계획에서는 하나의 공원에서만(5%)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선진 국립공원에서도 같이 국립공원에 적합한 교육적, 학술적, 정신적, 휴양탐방 목적의 국립공원 탐방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또 국립공원이 일반 관광지와는 구분되는 탐방지로 인식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국립공원계획에서 언급된 특이한 사항은 60%나 되는 국립공원이 표고와 경사를 용도지구의 구분근거로 삼았다는 것과 많지는 않으나(10%) 군사·통신·항로표시 시설을 자연보존지구 구분근거로 채택한 공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표고와 경사 이상의 지역을 자연보존지구의 구분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지형 국립공원이 많은 국내 국립공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고산지대의 생태계나 지형학적 특성에 관한 언급도 없이 단순히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다는 특징이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부합

표 3. 국립공원계획상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구분 요인

국립공원 구분요인(관리목적) 상:자연보존지구 하:자연환경지구	산지형													해안형				문화 재형 경주	계 (%)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한라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태안해안
생태계보존* (자연보호@)	0 0	0 -	0 0	0 -	0 -	0 -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 -	0 -	0 -	0 -	19(95.0) 11(55.0)
지형보존*	- -	0 0	-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 -	- -	3(15.0) 1(5.0)
학술적 가치*	- -	- -	0 -	0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 -	0 -	0 -	13(65.0) 0(0.0)
교육적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 0(0.0)
정신적, 문화적 가치*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0) 0(0.0)
개발, 점유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 0(0.0)
휴양탐방의 기회 제공*	- -	- -	- -	- -	- -	- -	- 0	- -	- -	0 -	- -	- -	- -	- -	- -	- -	- -	- -	- -	1(5.0) 1(5.0)
경관보존*@	0 0	0 -	0 -	0 0	0 -	0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0.0) 10(50.0)
동·식물의 종과 서식지 보존*@	0 -	0 -	0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0 0	0 0	18(90.0) 0(0.0)
문화유적 보호@	- -	0 -	0 -	0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15(75.0) 0(0.0)
훼손 방지 및 복구	0 0	- 0	0 0	- 0	- -	0 0	0 0	0 -	0 0	0 -	0 -	0 0	0 0	0 0	0 0	0 -	- 0	- 0	- -	15(75.0) 11(55.0)
수질·수자원 보호@	- -	- -	0 -	- -	- -	- -	- -	- -	0 -	- -	0 -	0 -	- -	0 0	0 -	- -	- -	- -	- -	6(30.0) 0(0.0)
군사·통신·항로 표시 시설보호@	- -	-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	- -	- -	- -	2(10.0) 0(0.0)
일정한 고도 이상을 지정@	0 -	0 -	0 -	0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12(60.0) 0(0.0)
농경지 및 초지조성, 조림@	- 0	- -	- 0	- 0	- -	- -	- 0	- 0	- 0	- 0	- -	- 0	- -	- 0	- 0	- 0	- 0	- 0	- 0	0(0.0) 14(70.0)
탐방 필요시설 설치@	- 0	- 0	0 0	- 0	- -	- 0	- 0	- 0	- 0	0 0	- 0	- 0	- 0	- 0	0 0	- 0	- 0	- 0	- 0	4(40.0) 14(70.0)

주: 0, 유 -, 무 *: 국제기준에 언급된 관리목적 @: 국내 각 공원계획에 언급된 용도지구 구분기준임.

되고 보존지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사·통신·항로표시 시설 등도 국가 기간시설로 그 필요성에 기인한 지구내의 부속이한 시설 허용행위로 언급될 수는 있으나 이들이 국립공원 지정과 보존지구 설정 그 자체의 근거로 고려되는 것은 국제기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수질·수자원의 보호라는 기준도 대기나 토양에 관한 언급 없이 수질만 별도의 기준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존기준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모두 국제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인위적 자연관에서 유인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지역에서 금해야 할 행위인 조림과 농경지 및 초지조성이 70%나 되는 공원계획에서 취락지구도 아닌 자연환경지구의 구분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공원법 제16조 2항의 문제점

에서 기인됐다고 판단된다.⁷⁾

이밖에 취락지구의 지정근거는 국내법에서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 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공원지정 이전에 이미 형성된 취락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본래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전통, 습관, 풍습, 의식 등의 유지에 필요한 전통취락이 국립공원에 지정될 취락지구로 적합하다.⁸⁾ 그리고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입장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을 공원 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가 지닌 이러한 기능들은 가능한 한 공원의 보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경계선 밖 인접 도시나 취락으로 유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⁹⁾

4) 용도지구별 면적 분포

국제기준에서는 국립공원이 용도지구로 구분될 경우, 공원면적의 최소한 3/4이 첫 번째 관리목적에 합당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한국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중에서 자연환경지구를 국제기준의 첫 번째 관리목적에 합당한 지역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도 합당한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모든 국립공원이 생태계 단절이나 허용행위 및 토지이용 상황을 떠나 단순히 총면적만을 고려했을 때 3/4 면적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6조 2항에 의하여 초지조성, 육림, 벌채, 부대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건축물의 증축 등 첫 번째 관리목적과는 상충되는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를 제외시키고 자연보존지구만을 고려 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자연보존지구의 면적비율이 최대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면적비가 겨우 38.6%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75% 면적비 조건에 충족되는 국립공원은 국내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기준에서는 3/4 이외의 나머지 1/3 면적도 첫 번째 관리목적과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휴양 및 탐방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유희, 음주가무용 시설들과 대규모 관광, 온천, 체육시설 등이 건설되어 있거나 각종 일반영업용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내 집단시설지구는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계획·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⁰⁾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립공원이 국제기준에 충족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관리되고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공원의 특성상 용도지구를 구분하더라도 그 면적의 3/4 이상이 보존지구로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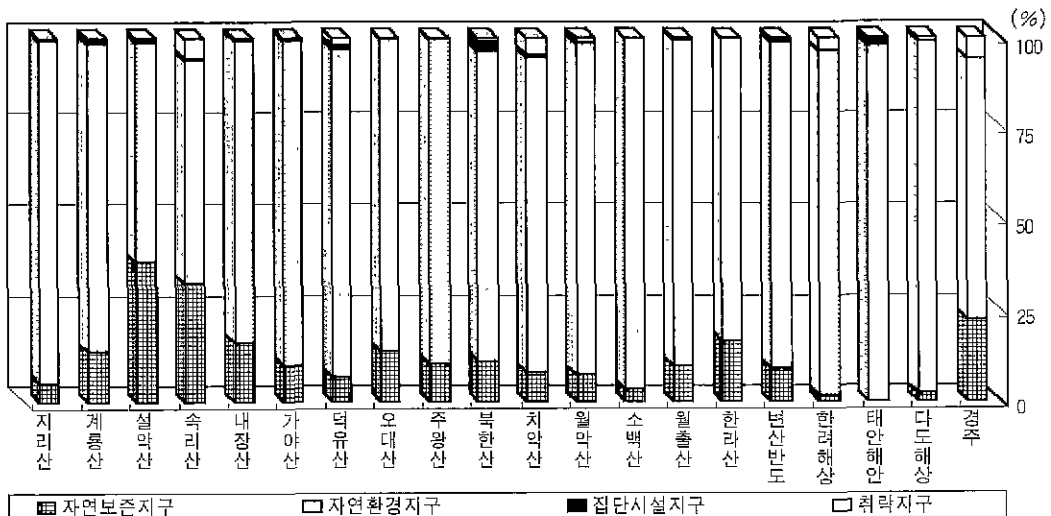


그림 1. 각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면적 비율

5) 용도지구 변경

한국 국립공원의 용도지구계획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겪어 최대 12차례까지 변경되었다. 용도지구 변경은 공원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정 당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최종 변경 년도의 면적을 비율로 환산해 보면 표 4와 같다. 여기서 도로개설에 따른 면적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용도지구별 변경의 대표적인 특색은 주로 자연보존지구 면적이 감소하고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증가한 것이다(그림 2). 자연보존지구 면적은 50%의 공원이 감소하고 25%의 공원이 변동 없으며, 25%의 공원은 증가하였다. 자연보존지구는 지정근거가 되는 요인이 퇴색 또는 소멸되어 그 구분목적이 상실될 경우에 그 면적을 축소 또는 폐지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자연보존지구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표 4. 각 국립공원별 용도지구의 면적 변화

	변경횟수	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지구	집단시설
지리산	9	- 82.7	42.5	- 79.1	528.5
계룡산	5	183.3	718.0	- 99.0	1000#
설악산	12	1.3	12.1	- 41.0	522.0
속리산	6	207.8	135.0	1,621.3	442.5
내장산	5	- 3.2	8.8	94.1	281.0
가야산	6	3.6	66.3	- 94.9	292.0
덕유산	8	- 79.4	50.5	- 72.9	1,207.0
오대산	4	1.6	6.6	- 94.8	85.0
주왕산	5	- 25.5	7.0	- 91.2	263.0
북한산	1	0.0	- 0.3	29.1	0.0
치악산	1	0.0	1.0	- 17.5	74.2
월악산	2	- 0.1	0.1	2.7	1.4
소백산	2	0.0	0.0	17.9	0.0
월출산	1	0.0	0.0	0.0	- 24.2
한라산	2	- 43.0	39.7	0.0@	-100.0*
별산반도	1	0.0	0.1	- 7.3	43.9
한려해상	9	- 7.7	4.8	- 50.5	393.8
태안해안	7	- 93.3	1.3	- 72.8	23.4
다도해상	6	- 11.1	27.1	- 87.1	- 3.9
경주	5	- 0.6	0.2	0.1	0.0
계(최대 증, 감소, 평균 %)	최다: 12 최소: 1 평균: 4.9	증: 207.8 감: -93.3	증: 718.0 감: -0.3	증: 1,621.3 감: -99.0	증: 1,207.0 감: -100.0

주. 지정 년도를 기준으로 한 최종 년도의 면적비율임.

#: 지정 년도의 해당지구 면적이 0인 경우

*: 최종 변경 년도에서 면적이 0으로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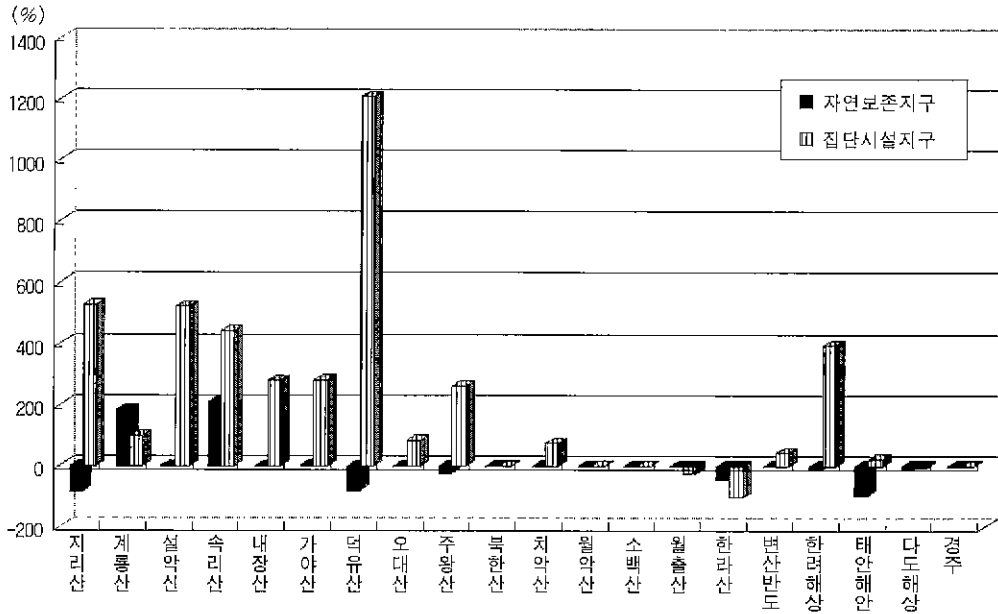
@: 공원이 지정 당시부터 없었던 경우

것을 의미한다. 취락지구의 변경에서 특이한 것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1986년도에 대폭적인 면적 증가가 이루어진 것인데(60%). 일반적으로는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면적감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전환을 통한 자연환경지구 면적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시설지구 면적은 70%의 공원계획에서 증가되었는데 특히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그 면적이 계속 증가하다가 1989년도에 지정 년도 대비 12배 이상 대폭적으로 증가되었고, 2배 이상 증가한 공원도 8개 공원이나 된다. 집단시설지구 면적의 증가는 공원계획에서 주로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집단시설지구는 계룡산 국립공원 제2동화사집단시설지구나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지구의 경우와 같이 온천 관광단지 건설을 염두에 두고 또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설천지구에서와 같이 국제 스키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개발지역인 집단시설지구로 용도전환 시키거나, 기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의 집단유치를 국립공원 경계선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집단시설지구가 보호지역 잠식의 형태로 추가 지정 또는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⁴⁾

한편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이유를 공원계획에서 살펴 보면(표 5), 사실적으로 공원 개발이유의 목적실현을 변경이유로 언급한 소수의 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용도지구 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용도지구 구분 근거실천,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 공원자원보존 등 표면적으로는 초기계획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그 이유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룡산, 속리산, 덕유산 국립공원 등에서와 같이 보호지역을 축소하고 집단시설지구를 추가지정 또는 확장하여 그곳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밖에도 용도지구 변경이유로 관광편의 제공, 보존자원감소, 지구별 여건변화, 민원발생, 사유지권입 억제, 측량오류의 교정 등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존의 우려와는 반대로¹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공원탐방



주: 지정년도 대비 최종년도의 면적비율임(지정년도에 해당지구 면적이 0.0이었던 경우에는 최종 변경년도에 해당 지구면적이 0.0이 된 경우와 비교하여 100%로 표현하였다).

그림 2. 자연보존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면적 변화

표 5. 국립공원계획에 나타난 용도지구계획 변경 이유

국립공원 용도지구계획의 변경 이유	산지형														해안형			분재형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한라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상	제주
용도지구 적지분석	0	0	0	0	-	0	0	0	0	-	0	0	-	0	0	0	-	0	0	-
용도지구 구분근거 제고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	0	0	-
합리적인 관리체계 확립	-	0	0	-	0	-	-	0	-	0	0	-	0	-	-	-	-	0	-	-
공원자원 보전	-	0	0	0	0	0	-	-	-	0	0	0	0	-	-	0	0	0	0	0
이용 합리화, 탐방형태 고려, 관광편의 제공	-	0	0	-	-	-	-	0	-	0	0	0	0	-	-	-	0	0	-	0
공원개발목적 실현	-	-	-	-	-	-	-	-	-	-	-	-	-	-	-	0	0	-	-	0
거주민구 증감 및 민원	-	-	-	-	-	0	0	0	-	-	-	-	-	-	-	-	-	-	-	0

주: 0, 유 -, 무

편의시설은 자동차로 약 40분의 시간거리에 위치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관광기반시설 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근거로 집단시설지구를 전면 폐지하였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는 공원 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관리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의 경우 공원지역의 고도가 높고 공원면적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용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과 한라산의 보존이 제주도 관광문화의 토대를 유지시켜 준다는 자치단체의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용도지구계획 수립은 본래 지정목적의 실행과 해당 공원을 지역특색에 맞게 관리하기 위함이고, 자연공원법에서도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용도지구계획은

우선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의 목적으로 그 다음은 국립공원에 합당한 탐방이용을 위하여 수립되고 변경되어야 한다. 이 때 국립공원의 이용도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탐방의 목적으로 보존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개발이용의 가능성과 그 개발계획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구분되거나 일반 관광편의 시설들을 국립공원 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살펴 본 국내 국립공원의 문제점 중에서 용도지구계획의 문제는, 자연보존지구 면적의 협소, 용도지구변경을 통한 집단시설지구의 증가와 개발이용, 다양한 생태계의 단절현상,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내의 자연훼손행위 허용 등을 언급할 수 있다.

4. 국제공원을 위한 대책

1) 용도지구계획 변경 모델 제안

앞에서 살펴 본 국립공원계획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 공원을 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의^{3) 4) 7)} 결과들을 개선하고 본고의 분석결과들을 종합·반영하여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 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한다. 여기서 고려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공원내 보존지역의 면적을 1,000ha 이상, 공원면적의 3/4 이상으로 확보, 2. 용도지구의 변경을 통한 공원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도지구 구분을 간소화, 3. 생태계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경계선 조정, 4.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연훼손 행위와 인위적인 이용 제한, 5. 국제기준에 준한 환경친화적 탐방이용, 그리고 용도지구계획의 직접적인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국제기준에 준한 공원관리와 제안한 변경 모델안

적용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을 모델안의 단계별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⁸⁾ 모델안을 자연공원법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1단계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한 안이고, 2단계는 자연환경지구와 허용행위에 관한 일부 내용의 개정이 요구되는 안이며, 3단계는 자연공원법 16조의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안으로 장기 시행목표 유도용 법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안이다.

모델안에서 보존지역은 자연상태로의 보존을 보장하는 지구로 단계별로 유도하고, 이 지역의 이용은 학술연구와 제한된 탐방로를 통한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탐방 목적으로의 이용으로 제한된다.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되도록 궁극적으로는 공원 내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국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만을 선별하여 관리지구로 구분·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전통취락, 문화유적, 사찰, 군사시설, 통신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이다.⁹⁾ 이들 지역은 그들의 특성과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규정을 각각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여기서 전통취락, 문화유적 및 사찰은 정신적, 교육적, 학술적, 문화적 휴양탐방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통취락으로 유지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취락과 사유지는 먼저 법개정과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기적으로는 휴경·휴업 유도, 용도전환, 고용과 토지이용의 교환, 장기임대, 토지교환, 매입 등의 계획을 해당 공원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단계별로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6).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계획취소가 가능한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미 개발된 지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공원경계선 밖 공원보호구역 안의 시설지구로 전환시켜 이 시설지구의 신규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원별로 해당 시설지구의 특성에 맞는 단계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 6. 국립공원의 단계별 용도지구계획 변경안

용도지구 구분	면적조정 및 해당지역	허용행위 및 관리	사유지, 사유시설물 계획
1 단계*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1. 3단계 중에서 추가 지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학술적 지원계획 수립.
2 단계#	1단계와 동일하나 자연환경지구구는 폐지.	1. 1단계와 동일하나 2. 자연보존지구 내 자연훼손 및 인위적인 이용 제한(육림, 벌채, 임도설치 및 공원사업의 금지). 3.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자연환경 보호 및 인문경관의 환경친화적 정비와 관리. 4.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 목적의 제한된 탐방 이용 허용.	1. 3단계 중에서 과도한 지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학술적,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3 단계@	보존지구	1. 관리지구를 제외한 국립공원 전지역(그 면적은 10km ² 이상, 공원면적의 75% 이상으로 확보). 2. 생태계와 자연지형의 보존가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보존지구와 공원면적 확대 조정. 3. 생태계 단절을 예방하도록 용도지구 및 공원 경계선 설정.	1. 환경친화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탐방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적, 학술적,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¹² 2. 휴경·휴업 유도지원 계획 및 제취업 알선 계획 수립. 3. 농정지의 전통 농어촌문화 체험학습장, 청정주말농장, 녹색SIT 등으로 활용 및 휴경유도 지원 보상 계획 수립 4. 환경단체 ¹³ 장학재단, 자치단체 등을 통한 사유지의 장기임대 지원 및 매입계획 수립, National Trust 운동 유도계획 수립. 5. 시설물의 용도전환 및 이전 지원 계획 수립. 6. 휴경·휴업과 공간 내 고용교환 계획 수립. 7. 국유지와 토지교환계획 수립. 8. 단계별 매입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
	전통취락 관리지구	법 제 2조 7항에 의하여 선별·지정되는 전통취락 보호지역.	1. 시행령에 규정된 전통취락 유지행위 허용. 2. 자연환경보호 및 인문환경의 환경친화적 정비와 관리 3.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 목적 탐방 이용.
	사찰, 문화재, 유적지, 군사시설, 통신시설 관리지구	다른 지역에 설치 또는 이전할 수 없는 시설을 위하여 법 제 2조 7항에 의하여 최소규모로 지정되는 지역.	1.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사찰, 문화재, 유적지, 군사시설 및 통신시설 유지행위 및 이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이용. 2. 기존 문화재의 개축, 재축 및 복원.
공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을 세분한 잠정 시설지구(잠정적으로 공원보호구역 내 세분지구로 축소 편입한 기존의 집단시설지구로 장기적으로는 인접 도시로 그 기능을 이전).	1. 기존시설의 자연공원 보존과 학술연구,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 탐방 목적으로 이용 및 환경친화적 관리. 2. 자연공원보존과 학술연구 및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 탐방에 장애가 되는 행위나 사업 및 시설의 신규 설치 규제.	

주·*: 현행법의 범주 안에서 실현가능(추가 재정부담 없음) #: 자연공원법 제16조의 일부 개정 필요(소규모 재정부담 필요)
@: 자연공원법 제16조의 전반적인 개정 필요(재정부담 증가)

자료: 조기호, 1995, 1997.

바람직한데 장기적으로는 공원인접지역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단계별로 인접 도시로 이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준에서 인정하는 다른 종류의 보존지역이나 천연기념물 등이 국립공원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원계획에 해당 지역을 명시하고 그 지역을 관련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

본 모델안은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립공원일수록 3단계 적용까지 시일이 요구되겠으나 각 공원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부터 단계적 부분적으로 실현을 유도하고, 시행목표와 일시의 예보를 통한 장기적 적응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의 실천은 단계가 상승할수록 국내 국립공원이 받고 있는 개발이용 압력과의 충돌이 예상되나 지정목적에 합당한 국립공원 이용방법을 즉 지정지역을 자연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탐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적합한 방법으로는 테마여행과 특수목적관광(SIT)의 생태관광, 역사·문화탐방, 환경교육탐방, 체험학습탐방, 현장답사탐방, 야외실습탐방, 녹색관광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위한 국립공원용 탐방이용 소프트웨어가 각 공원의 특색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¹²⁾ 이 때 인접 각급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및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인접 도시 및 취약과 연계된 환경친화적 탐방이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해당 공원 내 주민이 참여하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한 홍보 등의 노력은 개발이용 압력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¹³⁾ 특히 사유지와 사유시설물의 용도를 전환하여 환경친화적 탐방이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학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존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과 지리여행코스(Geogtrack), 지정학습장, 환경해설관 등을 지정·설치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인 탐방이용계획 및 탐방객 계도 프로그램도 앞으로 국내의 국립공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한라산 국립공원의 용도지구계획 변경안

제안한 모델안을 가장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

는 공원은 한라산 국립공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라산 국립공원은 공원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에 용이하다. 1. 집단시설지구와 취약지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분리분산된 지역이 없다. 3.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적다. 4. 국제기준의 1,000ha 면적 기준과 75%의 첫 번째 관리목적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5. 국·공유지 면적비율이 높다. 6. 다른 공원에 비하여 모델의 3단계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할 수 있다.

제안 모델을 적용한 한라산 국립공원의 용도지구계획 변경은 먼저 3단계를 직접 적용할 경우, 국제기준의 공원면적 75% 이상이 첫 번째 관리목적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앞장에서 언급한 기존 용도지구계획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합하여 보존지구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99번 국도와 11번 국도에 의하여 형성된 5개의 생태계 단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서남단과 동북단의 소규모 단절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도로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남북으로 공원구역을 확장하도록 계획하였다(그림 4).

도로에 의하여 단절되는 11번 국도 동쪽 지역과 99번 국도 서쪽 지역들은 각각 동물 이동통로를 지하나 도로 위로 건설하고 공원구역으로 존속시키는 안과 공원구역에서 공원보호구역으로 다시 변경 조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조치로도 모든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자는 공원면적의 감소와 보호구역의 관리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후자의 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공원보호구역으로 재조정된 면적 이상의 공원면적을 남쪽으로 확장시키고 별도의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쪽으로는 공원구역 확장은 산록도로와 11번 국도 및 관음사에서 11번 국도로 연결될 계획도로와 제주 컨트리클럽의 위치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인공시설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는 도로 남쪽과 현 공원 북쪽경계선 사이의 보호구역 면적은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고, 산록도로 북쪽의 공원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다. 남쪽으로는 공원면적 확장은 야영장이나 공동묘지 등 인위적 토지이용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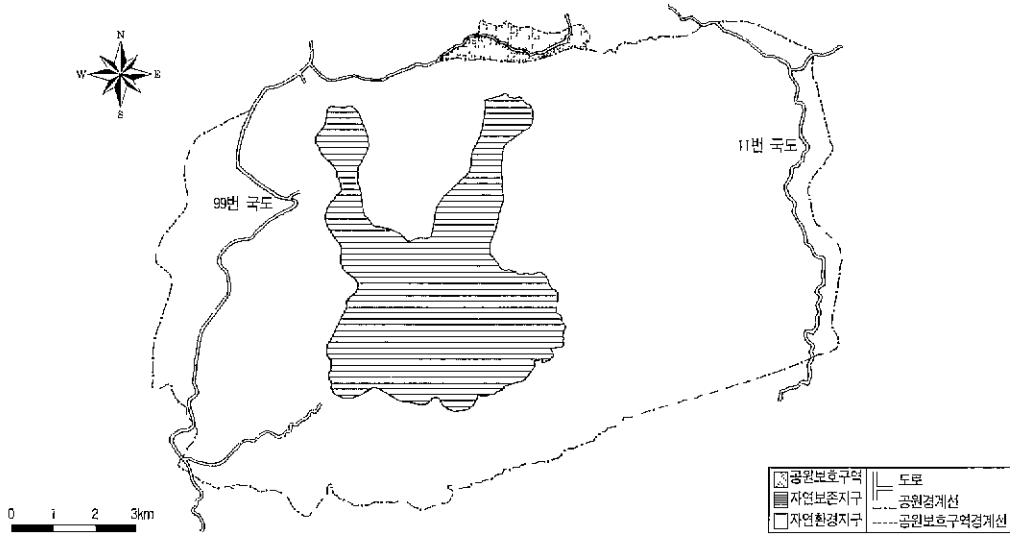


그림 3. 한라산 국립공원 용도지구계획(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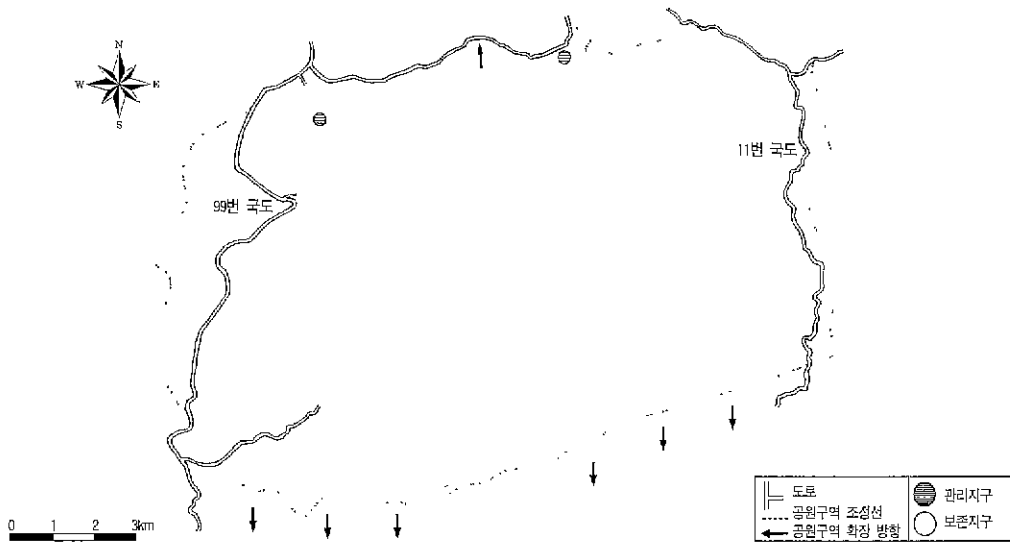


그림 4. 한라산 국립공원 용도지구계획(변경안)

하지 않은 면적 중에서 남에서 북으로 건설되어 온 도로들과 예정된 산록도로와 서성로가 만나는 부분까지 공원구역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으로의 공원구역 확장시 정확한 경계선 확정은 별도의 학제간 종합현지조사 연구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원구역내의 사찰들은 문화재관리지구 규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표 6의 모델을 적용하여 그림 4의 내용으로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합당하게 관리된다면 한라산 국립공원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공인을 위해서는 공원내의 대피소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휴게소와 관리사무소는 단계적으로 공원경계선 밖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주변지

역도 공원구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1, 2단계를 적용할 경우에도 자연환경지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자연보존지구를 확대시켜 변경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기 안에서 공원구역으로부터 제외시킨 남서단과 북동단의 소규모 단절지를 공원보호구역으로 계획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면 관계상 여러 개의 국립공원에 이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이외에도 계룡산 국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에 전고의 유사한 전 단계 모델안을⁴⁾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타의 국립공원에 이 모델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개정과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

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나의 국립공원이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본고의 모델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한 모델은 다양한 적용 사례연구와 학제간 종합연구를 통하여 각 공원특성에 맞게 조정·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검토기준이 타당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그 기준은 국제기준과 부합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원계획변경은 장기간 문제점이 누적되어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이행될 수도 있으나, 더 바람직한 것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장기계획과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도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공원 2000과 같은 장기계획과 관리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註

- 1)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과 같은 수준의 보존지역에 대한 유엔 목록』은 여러 차례 개정 출판되었는데, 1982년부터는 목록의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1993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로 출판되었다. 이 유엔 목록에는 총 5종류의 보호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현재는 6종류로 분류되고 있음), 한국의 20개 국립공원은 모두 II의 ‘국립공원’이 아닌 V의 ‘보호 육지경관과 해상경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의 ‘금강산 국립공원’은 유엔 목록에 정식 국립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국립공원들을 유엔 목록에 국립공원으로 등록시켰다.
- 2) <http://www.bmu.gv.at/~parks/allg/allg-was.htm>, <http://www.bmu.gv.at/~parks/allg/allg-pri.htm>, <http://www.tourist-net.co.at/natps-1ce.htm>.
- 3) 조기호, 1996. “환경영향 평가의 측면에서 본 호남고속철도 노선안의 타당성 비교”, 지리학논집, 22(1), 123-145.

- 4) 조기호, 1995, "용도지구구분의 오류에 따른 국립공원의 환경훼손과 그 방지책: 계룡산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논총, 3(1), 23-51; 조기호, 1997, "Harmonizing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Parks",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2(3), 299-310.
- 5) 건설부/내무부, 1979-1996, 국립공원계획(20개 국립공원).
- 6) IUCN/UICN, 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IUCN 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with the assistance of th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Gland/Switzerland.
IUCN/UICN/UNEP, 1994, 1993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Gland/Switzerland.
- 7) 조기호, 1994,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제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29(4), 383-408.
- 8) 본고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근거에 따라 산지형, 해안형, 문화제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문화제형은 경주국립공원, 해안형은 태안해안·다도해상·한려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지형에는 그 외의 15개 국립공원이 해당된다.
- 9)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에서도 자연공원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 10)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주국립공원에서는 1998년 8월에 공원관리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 11) 농림부, 1997, 농촌마을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최용은, 1997,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실천 방안.
- 12) 계룡산 국립공원 상신리 취락지구에서는 전통농경 및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어린이용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주민이 스스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사례도 있으며, 취락지구의 농경지를 농어촌 문화체험 학습장, 생협 등을 통한 무공해 계약재배지, 청정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고, 공원내 시설물을 체험학습용 시설로 활

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은 행정적 학술적인 지원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 13)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 1999년 5월 National Trust로 강원도 태백시의 변전소 건설 예정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文 獻

- 건설부/내무부, 1979-1996, 국립공원계획(20개 국립공원).
- 각 국립공원, 1997,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존계획(경주와 한라산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4, 국립공원시설총람(1987-1993).
- 국토이용관리법, 1972. 12. 30, 법률 제2,408호(최신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 자연공원법, 1980. 1. 4, 법률 제3,243호(최신개정, 1998. 2. 28, 법률 제5,529호).
- 자연공원법시행령, 1980. 8. 18, 대통령령 제9,993호(최신개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92. 5. 19, 내무부령 제561호(최신개정, 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
- 자연환경보전법, 1991. 12. 31, 법률 제4,492호(최신개정, 1997. 8. 28, 법률 제5,392호).
- 제주도, 1997, 제주도중산간지역종합조사.
- 조기호, 1991, "Einrichtung und Verwaltung eines Nationalparks - Ein Beispiel, Schweizerischer Nationalpark", *지리학논집*, 17(1), 145-156.
- _____, 1992, "국립공원에서의 자연보호와 관광간의 갈등원인과 그의 해소방안에 관한 小考", *지리학논집*, 18(1), 29-43.
- _____, 1994,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제안", *국토계획*, 29(4), 383-408.
- _____, 1995, "용도지구구분의 오류에 따른 국립공원의 환경훼손과 그 방지책: 계룡산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논총*, 3(1), 23-51.
- _____, 1997, "Harmonizing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Parks" *Journal*

-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2(3), 299-310.
- 조태동 외 2인, 1998,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 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85-202.
- Bibelriether, H., 1997, Bundesamt für Naturschutz, FÖNAD, Studie über bestehende und potentielle Nationalparke in Deutschland, *Angewandte Landschaftsökologie*, 10.
- Botschaft zu einem Bundesgesetz über den Schweizerischen Nationalpark(Nationalparkgesetz), 1979.
- Bundesgesetz über den Schweizerischen Nationalpark im Kanton Graubunden (Nationalparkgesetz), 1980.
- Die Nationalparkgesetzgebung in Kärnten, Kärntner Nationalparkgesetz, 1983, *LGBL*, 55/1983 über die Errichtung von Nationalparks.
- Die IUCN-Kriterien der "1985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 Offizielle Übersetzung -, 1990, Wien.
- Gesetz zum Schutz des schleswig-holsteinischen Wattenmeeres(Nationalparkgesetz), 1985.
- IUCN/UICN, 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IUCN 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with the assistance of th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Gland/Switzerland.
- Landesamt für den Nationalpark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1987, Allgemeinverfügung, Zulassung von Ausnahmen nach dem Nationalparkgesetz, *Amtsblatt für Schleswig-Holstein*, 34, 342-343.
- Nationalpark Newseedler See-Seewinkel(Austria, s first IUCN approved national park): <http://www.tourist-net.co.at/natps-1ce.htm>.
- Stock, M. et al., 1996, Ökosystemforschung Wattenmeer-Syntheseberichts, Grundlagen für einen Nationalparkplan, *Schriftenreihe des Nationalparks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8.
- IUCN/UICN/UNEP, 1994, *1993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Gland/Switzerland.